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1,881,344	11,756,440
일반회계	346,583,335	10,397,500
특별회계	45,298,009	1,358,940
공기업특별회계	11,060,581	331,81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060,581	331,817
기타특별회계	34,237,428	1,027,123
수질개선 특별회계	16,772,452	503,174
주택사업 특별회계	4,385,725	131,572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737,903	22,137
자활기금 특별회계	1,882,558	56,477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8,244,500	247,335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15,313	27,459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51,243	13,537
기반시설 특별회계	33,084	9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814,650	24,440

제 2 조 세입 및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및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사고이월사업은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672,77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